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및 선거제도 정비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92호)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5호)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1호)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87호)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8호)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8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12
㉠ 선거제도 정비	12
1. 동시이사장선거일의 「위탁선거법」과 불일치 시정	12
2.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 확대	17
3.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 등 개선	23
4. 대의원선거운동시 제한행위 명시	31
5.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 삭제	36
6. 직장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의무 면제	39
7. 불법선거 자수자 특례 대상 축소 등	45

②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49
8. 대규모 금고의 총회 개의 특례 적용기준 강화	49
9. 총회 의결 사항 일부를 회원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54
10. 금고·중앙회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 신설	57
③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61
11. 중앙회 조직 개편	61
(1) 중앙회 조직 개편 내용 요약	61
(2) 중앙회 회장의 권한 제한·분산 검토	62
(3) 경영대표이사 직위 신설 검토	73
(4) 감사위원회 소속 및 구성 개편 검토	77
(5) 이사회 및 임원 구성 개편 검토	82
(6) 금고감독위원회 제도 개편 검토	87
12.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92
13.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 신설	97
14. 금고 이사장 장기 재임 제한	100
④ 건전성 강화 및 회계제도 개선	105
15. 금고·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제한 근거 신설	105
16. 금고·중앙회 적립 의무 강화 등 회계규정 정비	108

17. 금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의무화	116
18. 예금자보호준비금 한국은행·금융기관 차입 근거 마련	118
19.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 마련	122
 [5] 상급기관 감독권 강화 및 회원 권익 보호	138
20. 중앙회장의 개별 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신설 등	138
21. 회원의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 신설	141
22. 행안부장관의 금고·중앙회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 신설 ...	145
23.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규정 법률로 상향	148
 [6] 기타 제도 개선사항	163
24.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 근거 마련	163
25.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참여 근거 마련 ..	166
26.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근거 명확화	170

I . 제안경위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28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5.
3. 회부연월일 : 2024. 7. 16.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8. 7.
3. 회부연월일 : 2024. 8. 8.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8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24.
3. 회부연월일 : 2024. 9. 25.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8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안)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 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안)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안)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안-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지만, 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 이사의 대표 업무 외(外)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비전문경영인으로서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에게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함(안 제9조제5항).
- 나.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의2).
-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한정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 라.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의 해임청구를 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회원 100명 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마.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
- 바.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79조의2).
- 사.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함(안 제87조).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안-2)

제안이유

현재 금고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보증보험 대부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및 기금 조달 제약 등으로 인해 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근감사 의무 선임제도 또한 없음.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장은 법령이나 정관의 절차·의무를 미이행한 금고 또는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는 제제 요구만 가능하여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이 아닌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어 출자 1좌 금액보다 적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지급이 불가하고, 일부 금고는 과대 배당을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및 금고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재적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1명 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35조).

- 나. 총회 등 의결의 특례를 두어 회원의 투표로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 다. 상근 임원을 두어야 하는 금고의 규모와 상근 임원의 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
- 라. 금고의 상환준비금의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28조).
- 마. 비회원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바.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하며, 잉여금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사. 준비금 자금 조성에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추가하고, 준비금의 용도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부실 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을 추가함(안 제72조 및 제72조의3).
- 아.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안 제10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자. 주무부장관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 정리토록 함(안 제74조의2)

차. 주무부장관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 및 부실 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의·경고, 출자금의 감액, 자기 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등 적기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카.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Ⅲ. 검토의견

① 선거제도 정비

1. 동시이사장선거일의 「위탁선거법」과 불일치 시정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5년 3월 12일로 규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5일로 일주일 앞당기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현행	김상욱의원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①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u>2025년 3월 12일에</u>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u>두 번째</u> <u>수요일</u>에 동시 실시한다. ④ ~ ⑨ (생략)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u>2025년 3월 12일</u>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u>2025년 3월 12일</u>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2025년 3월 5일</u>----- ----- ----- <u>첫 번째</u>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 <u>2025년 3월 5일</u> ----- ----- ----- -----.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u>2025년 3월 5일</u> ----- -----

현행	김상욱의원안
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1년 3월 2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되거나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에 따라 합병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장의 직무는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현행법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을 통해 종전 임의 규정이었던 이사장 회원투표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면서,²⁾ 그 적용을 2025년 3월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개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는 개별 법률뿐 아니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와 선거일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2021년 10월 19일 개정 당시 같은 법 제14조³⁾에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매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같은 날짜로 선거일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법」 부칙에도 2025년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을 3월 두 번째 수요일인 “2025년 3월 12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보궐선거일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시행⁴⁾되어 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와

2)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3) 「법률 제19623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4)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무상 준비기간이 겹치는 점을 보완하고자, 2023년 8월 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일을 매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1주일 앞당겼음.

개정안은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부칙의 2025년 제1회 새마을금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을 기존 3월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인 “2025년 3월 5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관계 법률 간 불일치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2023년 4월 11일 개정을 통해 이사장 중 상근이사장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각종 근무기간 요건을 두고 있는데⁵⁾, 개정안과 같이 동시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선거가 1주일 앞당겨지면서 이사장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1주일 차이로 요건을 불충족하여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현행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을 현행 “후보자등록일 전일(2025년 2월 17일)”의 1주일 이후인 2025년 2월 24일⁶⁾로 적용하는 특례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6)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규정인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상근임원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은 “후보자등록일 전일”인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후보자등록일은 선거일(2025년 3월 5일)의 15일전인 2월 18일이고 그 전일은 2월 17일이므로, 그로부터 1주일 이후인 2월 24일을 기준으로 상근임원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필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6조(피선거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정관 제39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선거권 자격기준 기산일은 임원선거공고일 현재로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제18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 확대

개정안은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임(윤건영·이성권-1의원안 제9조제5항).

현행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1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생략) ⁷⁾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 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u>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 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 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 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 여만 의결권과 선거권 을 제한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⑥ ~ ⑪ (생략) ⁸⁾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회 원에 대하여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 한할 수 있다.</u> 1. 미성년인 회원 2. <u>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회원</u> 3. <u>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 자좌수 미만인 회원</u>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회 원에 대하여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의결권 및 선거권 을 제한할 수 있다.</u> 1. 미성년자 2. <u>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회원</u> 3. <u>출자액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u> ⑥ ~ ⑪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1
	① 제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원을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현행법이 회원 자격 유지 기간 6개월 미만인 회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12개월 미만 회원으로 확대하고, ② 일정한 출자규모 미만인 회원에 대한 제한을 신설하고 있음.

7) 「새마을금고법」

-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8) 「새마을금고법」

-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 ⑧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⑨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⑩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른 의결권·선거권 제한 회원 요건 변동]

구분	현행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1
나이	미성년자 제한	좌동(미개정)	
회원 기간	6개월 미만 제한	12개월 미만 제한	
출자 규모	-	정관 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주)} 미만 제한	행정안전부고시 출자액 미만 제한

주) 출자좌수: 회원의 출자금을 금고에 출자할 수 있는 단위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 참고로, 출자좌수당 단위금액은 금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중앙회는 2만원 이상을 권고 중

현행법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2025년 3월부터 적용⁹⁾)을 통해 종전 임의 규정이었던 이사장 회원투표 선출을 일정 규모 이상 금고¹⁰⁾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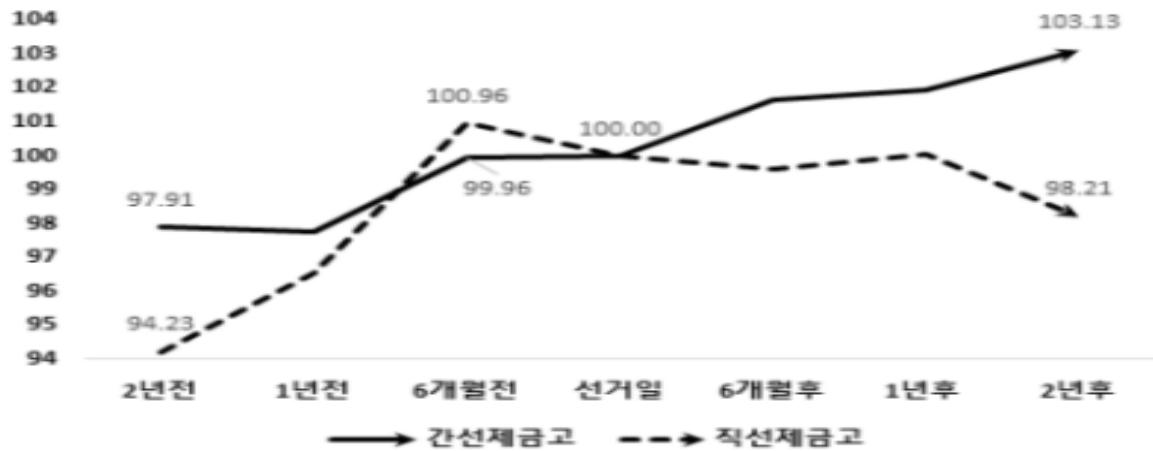
개정안은 회원투표시 이사장 후보자들이 선거 직전 출자금 대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투표를 하게 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기·소액 출자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실제로 2022년 4월말 재임 중인 이사장 선출 선거에 대해 선거일 전후 2년간 금고 회원수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 그래프와 같이 간선제(대의원회 선출) 금고는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직선제(회원투표 또는 총회 선출) 금고는 선거 6개월전 회원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상기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실재하는 것으로 보임.

9) 2025년 3월 제1차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할 예정임.

1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상 i) 선거 전전연도 총자산(평균) 2,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는 의무적으로 이사장을 회원투표로 선출하여야 함.

[현행 직선제·간선제 금고별 선거 전후 회원수 변동 현황(선거일 = 100.00%)
(단위: %)



구분	2년전	1년전	6개월전	선거일	6개월후	1년후	2년후
간선제	97.91	97.74	99.96	100.00	101.64	101.92	103.13
직선제	94.23	96.53	100.96	100.00	99.59	100.06	98.21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

다만, 현행법¹¹⁾은 이미 선거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어 상기 부정행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회원 자격 유지 기간 외에 출자 규모로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원 자격 유지 기간뿐 아니라 출자 규모(출자좌수 또는 출자액)로도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여 선의의 소액 출자 회원의 권리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85조(벌칙)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호금융기관의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 규정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회원 기간	6개월 미만 제한			3개월 미만 제한	6개월 미만 제한	12개월 미만 제한
출자 규모	-			-	-	일정 규모 미만 제한

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인 사람에게만 의결권·선거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엄밀히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조합원이 된 후에는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모두 의결권·선거권을 인정받고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회원 자격 유지 기간뿐 아니라 출자 규모(출자좌수 또는 출자액)로도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 규모의 기준을 정관에 포괄 위임하면 일부 금고에서 소수 회원의 운영권 독점을 위해 해당 규정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출자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 밖에 윤건영의원안은 회원 자격 유지기간 요건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출자 규모 요건은 신규 총회·선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둔 반면, 이성권의원안-1은 두 요건 모두에 대해 기존 회원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두 개정안 모두 회원 자격 유지기간 개정 내용은 기존 회원에 적용되지 않지만, 출자

규모 개정 내용은 윤건영의원안의 경우 신규 총회·선거부터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차이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① 이미 가입되어 있던 소액 출자 회원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② 동 부칙의 목적은 기존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 “적용례”보다는 “경과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보임.

3.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 등 개선

개정안 중 이상식의원안은 ① 이사장 선출방식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려는 것임(이상식의원안 제18조제5항).

현행	이상식의원안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④ (생략) ¹²⁾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u>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u>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u>제18조제5항</u>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장부터 적용</u> 한다.	

12)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음 이성권의원안-1은 ②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의 당선자 결정 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고(이성권의원안-1 제18조제8항제1호·제2호), ③ 최다득표제 하에서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당선자 결정기준이 부재한 점을 보완하고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며(이성권의원안-1 제18조제8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신설), ④ 2025년부터 이사장 선거가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되어 이사장 선거와 이사장 외 임원 선거의 동시 실시가 불가해지므로 두 선거의 동시 실시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이성권 의원안-1 제18조제9항).

현 행	이성권-1의원안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⑥·⑦ (생략) ¹³⁾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⑧ ----- -----.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u>선출하는</u>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단서 신설>	1. ----- <u>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는</u>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u>총회에서 선출하거나</u>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u>대의원회에서</u> ----- -----결정한다. -----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현행	이성권-1의원안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⑨ ----- ----- ----- -----. ----- -----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제3조(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이후 소집하는 총회·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u> 적용한다.	

13)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대의원회 선출방식 폐지

현행법상 금고 이사장 선출방식을 살펴보면, 총자산 2,000억원 이상 지역금고는 의무적으로 ① 회원 투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나머지 직장금고¹⁴⁾ 및 총자산 2,000억원 미만 지역금고는 ① 회원 투표, ② 총회 선출, ③ 대의원회 선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③ 대의원회 선출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의원회는 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두는 의결기구로서 ③ 대의원회 선출은 ① 회원 투표나 ② 총회 선출에 비해 소수만 참여하여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 선출의 대표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① 회원 투표나 ② 총회 선출은 ③ 대의원회 선출에 비하여 높은 선거비용이 소요¹⁵⁾된다는 점에서 소규모 금고까지 ① 회원 투표나 ② 총회 선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금고 운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은 “직장금고” 및 “총자산 2,000억원 미만 지역금고”

14) 엄밀히 현행법령상 개별 금고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로 구분됨. 다만, 후자는 모두 동일한 직장 내 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직장금고”로 칭하고 있음.

1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고 평균회원수인 6,300명과 평균대의원수인 120명을 기준으로 선출방식별 선거비용을 추산한 결과, ① 회원 투표는 5,940만원 ② 총회 선출은 3,305만원 ③ 대의원회 선출은 2,450만원이 소요됨.

모두에 대해 대의원회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있는데, “직장금고”의 경우 통상 해당 직장의 특정 직무담당자 또는 특정인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면서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직장 금고는 회원이 전국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① 회원 투표나 ② 총회 선출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선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총회 선출 이사장 당선자 결정 기준 변경

현행법상 3가지 금고 이사장 선출방식별로 당선자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① 회원 투표는 최다득표제, ② 총회 선출 및 ③ 대의원회 선출은 과반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② 총회 선출시 당선자 결정기준을 최다득표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② 총회 선출은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등 보다 대표성이 높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③ 대의원회 선출 보다 ① 회원 투표와 유사하며, 이에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최다득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이사장을 최다득표제로 선출하게 되면 과반수득표제 선출시 보다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신협은 과반수득표제를 채택 중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최다득표자 복수시 당선자 결정 기준 신설

현행법에는 이사장 당선자 결정 기준 중 최다득표제 하에서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의 결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i)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¹⁶⁾ 및 산림조합¹⁷⁾도 개별 조합장을 최다득표제로 선출하면서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¹⁸⁾ ii) 국회도 각종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때,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16)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7) 「산림조합법」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8) 수협은 조합장 선출방식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93조제1항에서 최다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협은 이사장 선출방식이 과반수득표제임.

19)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이사장 외 임원 선출방식 특례 정비

현행법은 이사장 외 임원의 선출방식을 총회 선출로 규정하되, 이사장을 회원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행정편의를 위하여 이사장 외 임원도 같은 날 같은 방식(회원 투표)으로 동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성권의원안-2를 통해 신설되는 제16조의2제1항제2호²⁰⁾에 따르면 이사장 외 임원 선임은 선출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회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기 특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해당 특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5) 부칙

첫째, 개정안은 상기 4개 개정사항 모두에 대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 대의원회 선출방식 폐지, (2) 총회 선출 이사장 당선자 결정 기준 변경 및 (3) 최다득표자 복수시 당선자 결정 기준 신설은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 「의안번호 220428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반면, (4)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는 2025년 3월부터는 이사장 선거가 구·시·군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되는 것에 연동된 관련 규정 정비이므로, 시행일을 해당 선거일 또는 그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1) 대의원회 선출방식 폐지의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장 선출은 대의원회 선출방식을 폐지하더라도 회원 투표 및 총회 선출 2가지 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선거 또는 총회 공고를 거쳐 선출을 하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개정안은 (2) 총회 선출 이사장 당선자 결정 기준 변경과 (3) 최다득표자 복수시 당선자 결정 기준의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소집하는 총회·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총회·대의원회도 선거와 같이 소집 “공고”를 거쳐 소집되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소집하는 총회·대의원회”가 아니라 “소집 공고하는 총회·대의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의원선거운동시 제한행위 명시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원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각종 제한행위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²¹⁾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22조).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u>임원</u> 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 <u>임원 또는 대의원</u> ----- ----- -----.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현행과 같음)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3.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u>임원의</u>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u>임원선거</u>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5. <u>임원 및 대의원의</u>----- -----<u>선거</u>-----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상 대의원회는 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두는 의결기구이며²²⁾, 그 구성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 중 선거를 통해서 선임되고 있음²³⁾.

i) 대의원은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하는 등 일반 회원에 비해 높은 권한을 가지는 직위이고, ii) 이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²⁴⁾은 대의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선거시

21) 「새마을금고법」

제85조(벌칙)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3) 현행법에는 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선거를 통해 선임됨을 전제로 재선거·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하는 조항이 있음.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24)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종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빠져있는 제22조제3항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도 임원 외에 대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며, 실제 수협은 제22조 제3항의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대의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각 호 생략)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②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⑧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 비상임이사 및 감사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산림조합법」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제22조 조제목을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또는 “선거운동 제한”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5.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 삭제

개정안은 금고의 임원 선거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공명선거감시단의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23조).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u> ④ <u>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u>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 <u>위원이</u>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명선거감시단은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7명으로 구성하여 불법선거 예방·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²⁵⁾으로 임원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26일 개정(2018년 6월 27일 시행)을 통해 도입된 것인데,

개정안은 현행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2022년 4월 20일 시행)되어 2025년 3월²⁶⁾부터 임원 선거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사장 선거의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이사장 선거의 경우 국가기관인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위탁하게 된 후에도 별도의 기구를 두어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 임원 선거의 경우 필요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²⁷⁾에 따라

2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4(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④ (생략)

26)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2021.10.19.)」 부칙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7)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지구역·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1. 의무위탁선거: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 임의위탁선거: 제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유사한 기능(위반행위 사전안내·단속·조사 등)을 가진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직장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의무 면제

현행법상 개별 금고는 이사장 선거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시·군선관위에 이를 위탁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개별 금고의 두 유형인 지역금고·직장금고 중 직장금고에 대해서는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윤건영·이성권-1의원안 제23조의2).

현행	윤건영·이성권-1의원안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u>금고</u> 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u>지역금고</u> ----- -----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윤건영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1)	
제5조(선거관리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장 선거를 위탁(「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령상 개별 금고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금고”²⁸⁾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²⁹⁾로 구분됨. 이 중 후자는 모두 동일한 직장 내 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직장금고”로 칭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별 금고의 임원이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19일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³⁰⁾부터 이사장 선거를 구·시·군선관위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금고”의 경우 통상 해당 직장의 특정 직무담당자 또는 특정인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면서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³¹⁾

28)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2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 다. (생략)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30)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2021.10.19.)」 부칙

제6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1) 실제로 2023년 ~ 2024년 10월간 직장금고 이사장 선거는 총 52건이 있었는데 모두 후보자가 1인이었음. 또한 2025년 이사장 선출 예정인 63개 금고에 대해 구·시·군선관위 위탁비용을 추산해보면 평균 1.1억원으로 산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적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현행법 제23조의2는 제1항에서 선관위 위탁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지역금고·직장금고 이사장 선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탁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지역금고·직장금고 이사장 외의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직장금고 이사장 선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를 제2항에 포함시켜 위탁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u>금고</u> 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u>지역금고</u> ----- ----- ----- ----- ----- ----- ----- -----.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u>지역금고</u> ----- ----- ----- ----- ----- ----- ----- -----.
② <u>금고</u> 는 <u>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u> 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u> ----- ----- ----- -----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는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 ----- ----- ----- ----- 제 24조, ----- ----- ----- ----- ----- ----- ----- ----- --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 ----- -----.

셋째, 윤건영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이성권의원안-1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소요가 없으며 금고 이사장 선거의 구·시·군
선관위 위탁을 의무화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불법선거 자수자 필요적 감면 사유 및 대상 축소 등

개정안은 임원 선거 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자수한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 및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87조).

현 행	이성권의원안-1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u> 1. <u>제22조³²⁾제2항(제64조의2제6항³³⁾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u> 2. <u>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u> <신 설> <신 설> ② <u>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u>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u>제22조 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u>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후보자 및 그 배우자</u> 2. <u>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u> 3. <u>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u> 4. <u>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u> ② <u>제1항 본문</u>-----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금품·향응 등의 제공(제2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수령(제22조제2항제3호), 허위사실유포·사실적시명예훼손(제22조제2항제4호), 법정기간 외 방문·모임(제22조제2항제5호), 법정방식 외 선거운동(제22조제3항·제4항) 등 대부분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³⁴⁾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후보자·배우자,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만 필요적 감면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려는 것임.

32)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④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3)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중 “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 34)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적 감면”과 달리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형을 감면해야하는 경우를 의미함. 참고로,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자수자의 “임의적 감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자수자 필요적 감면 사유 변동 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법 제22조제2항	회원·가족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제1호)	○	×
	상대 후보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제2호)	○	×
	금품·향응 등 수령·승낙 또는 요구·알선(제3호)	○	△ (수령·승낙만 존속)
	허위사실유포·사실적시명예훼손(제4호)	○	×
	법정기간 외 방문·모임(제5호)	○	×
법 제22조제3항·제4항	법정방식 외 선거운동	○	×

주) 행위주체 면에서도 “후보자·배우자”,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살펴볼 때, 다음 표와 같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품·향응 등의 수령에 대해서만 자수자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이를 두고 있지 않은데 반해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다소 많은 행위에 대해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둔 측면이 있음.

[상호금융기관 선거 위법행위 자수자 특례 적용 행위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회원·가족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	×	×	×	×	○	×
상대 후보에게 금품·향응 등 제공	×	×	×	×	○	×
금품·향응 등 수령·승낙	○	○	○	×	○	○
허위사실유포·사실적시명예훼손	×	×	×	×	○	×
법정기간 외 방문·모임	×	×	×	×	○	×
법정방식 외 선거운동	×	×	×	×	○	×

전술하였듯이, 2021년 9월 28일 현행법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금고에서 이사장 회원투표 선출이 의무화되면서 선거 과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상호금융 기관 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금품·향응 등의 수령에 대해서만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

②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8. 대규모 금고의 총회 개의 특례 적용기준 강화

개정안은 대규모 금고의 총회 개의 특례 적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안-2 제13조 및 제35조제6항).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u>300명</u>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151명</u>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 ----- ----- ----- ----- <u>500명</u> 을----- <u>251명</u> ----- -----.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³⁵⁾ 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151명</u>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 ----- ----- <u>251명</u> ----- ----- -----.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 ³⁶⁾ 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151명</u>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u>251명</u> ----- ----- -----.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³⁷⁾ ① (생략)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개정안 생략: 목차 16에서 검토)

현행	이성권의원안-2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6에서 검토)
④ (생략)	④ (개정안 생략: 목차 16에서 검토)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u>151명</u>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 ----- ----- <u>251명</u> ----- ----- -----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생략)	⑩ (개정안 생략: 목차 16에서 검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제13조 및 제3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5)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6) 「새마을금고법」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7)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填)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현행법은 금고 총회의 개의요건을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규정하되, 회원 300명 초과 대규모 금고는 소액 거래 회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과반수 출석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회원수에 관계없이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준을 500명 초과 금고로 강화하고 개의요건도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동 특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인데, 2024년 11월 현재까지 26년 이상 경과하는 과정에서 금고수가 감소하고 회원수가 확대되어 금고당 회원수가 증가³⁸⁾하는 금고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부합하도록 대규모 금고의 개의요건 특례의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38) 2000년 금고수 1,817개당 평균회원수는 약 3,830명 → 2023년 금고 1,288개당 평균회원수는 6,64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각 연도 「새마을금고통계」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출자료).

첫째, 현행법은 회원 300명 초과 대규모 금고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간이하게 하는 제도로써 상기 총회 개의요건 완화 특례뿐 아니라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³⁹⁾도 두고 있음. 대의원회는 현행법 시행령⁴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반수인 51명 이상으로 개의할 수 있어, 총회 개의요건 완화 특례 보다 의사결정을 더욱 간이하게 하는 특례라 하겠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총회 개의요건 완화 특례만 개정하면, 회원 300명 초과 500명 미만인 금고는 보다 강한 특례인 대의원회 갈음 특례는 적용받으면서 보다 경미한 특례인 총회 개의요건 완화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는 특례의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개정안의 총회 개의요건 완화 기준에 맞추어 대의원회 갈음 특례의 기준도 500명 초과로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9)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대의원회 등)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른 금고 규모별 총회 개의요건 특례 적용 여부]

회원수	개의요건 완화 특례 (251명 이상 출석)	대의원회로 갈음 특례 (50명 이상 출석)
300명 이하	-	-
300명 초과 500명 이하	-	○
500명 초과	○	○

둘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제1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총회는 (회원·감사의 소집요구) → 공고 → 개의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때 총회의 “소집”과 “개의”는 동일한 절차이므로 경과조치의 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소집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개정안은 개의요건만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결정족수는 개정되지 않으므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개의정족수” 또는 “개의요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9. 총회 의결 사항 일부를 회원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은 현재 총회 의결사항인 금고의 해산·합병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회원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성권의원안-2 제16조의2 신설).

현 행	이성권의원안-2
<신 설>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⁴¹⁾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해산·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⁴²⁾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제16조제1항⁴³⁾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1)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현행법상 금고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① 회원투표, ② 총회 의결, ③ 대의원회 의결 등 3가지가 있음.

의사결정의 대표성 측면에서 3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우선 대의원 간접 투표로 진행되는 ‘대의원회 의결’이 가장 대표성이 낮음. 다음 ‘회원투표’와 ‘총회 의결’은 다음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체 회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회원투표’가 참여자에게 상대적으로 긴 투표시간과 다수의 투표장소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새마을금고 주요 의사결정 방식 비교]

구분	회원투표	총회 의결	대의원회 의결
참여요건	전체회원 ※ 의결·선거권 제한회원 제외	전체회원 ※ 의결·선거권 제한회원 제외	대의원인 회원
개회의요건	-	과반수 출석 ※ 회원 300명 이상 금고는 151명 이상 출석	과반수 출석
의결요건	과반수 찬성 (또는 다수득표자)	과반수 찬성(또는 다수득표자) ※ 정관변경 및 해산·합병·휴업은 2/3 이상 찬성	
시간적 제약	상대적으로 긴 시간 부여 (ex. 9~18시)	특정 시점에 실시	
공간적 제약	여러 투표소 설치	단일 장소에서 실시	

42) 「새마을금고법」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이성권의원안-2에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정)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3) 「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총회 의결사항⁴⁴⁾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금고의 해산·합병과 임원의 선임·해임을 회원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고 운영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음.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회원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상호금융기관의 회원투표로 갈음 가능한 총회 의결사항]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정관변경	-	△ (조합장선출 정관변경)	-	-	-	-
조직변경	○ (해산·합병·분할 및 품목조합으로 전환)	○ (해산·합병· 분할)	○ (해산·합병· 분할)	○ (해산·합병· 분할)	-	○ (해산·합병)
임원선임	△ (조합장선출)	-	△ (조합장선출)	○	-	○
임원해임	○	-	-	-	-	○

44)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0. 금고·중앙회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 신설

개정안은 금고와 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신규로 부여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4항).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u><신설></u>	제1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u><신설></u>	
③ (생략) ⁴⁵⁾	⑤ (생략: 목차 13에서 검토)
④ (생략)	⑥ (생략: 목차 13에서 검토)
⑤·⑥ (생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60조(이사회) ① (생략) ⁴⁶⁾ ②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6. (생략) 7. (생략)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목차 11-(3)에서 검토)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7. (현행과 같음) ④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5) 「새마을금고법」

제17조(이사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2.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사회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6) 「새마을금고법」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현행법상 금고·중앙회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인 이사장·중앙회장에게 있음. 다만, 현행법은 총회의 경우 추가로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과 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에도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사회의 경우에는 회원과 감사기구에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금고·중앙회의 이사회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인 이사의 소집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금고·중앙회 의사결정기구 소집 또는 소집요구권자]

구분	금고		중앙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기관장 (이사장·회장)	○	○	○	○
구성원 (회원·이사)	○ (1/3 이상 동의)	-	○ (1/3 이상 동의)	-
감사기구 (감사·감사위원장)	○	-	○	-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은 신탁에서 도입하고 있고, 의안제안권은 입법례가 없음.

[상호금융기관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탁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이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	-	-	-	○ (2명 이상 요구)	-	○ (1/3 이상 요구)
이사의 이사회 의안제안권	-	-	-	-	-	○

그러나 입법례의 존부와 별개로 ① 금고·중앙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소집 권한을 그 구성원에게도 부여하는 것은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②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회 경우 소집권이 원칙적으로 각 이사에게 있으며⁴⁷⁾, 헌법에 따른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도 국회의원(재적의원 1/4 이상)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⁴⁸⁾ 주요 합의제 의결기구에도 그 구성원에게 그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7) 원칙적으로 모든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상법」 제390조제1항 1문),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상법」

제390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8) 「대한민국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11. 중앙회 조직 개편

(1) 중앙회 조직 개편 내용 요약

새마을금고 중앙회 소속 주요 기구로는 ① 총회(회장과 전체 회원 금고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 ② 이사회(회장과 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된 주요사항 의결기구), ③ 감사위원회(중앙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기구) 등이 있음. 또한 회장 소속으로는 개별 금고를 감독하는 ④ 금고감독위원회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도]



※ 금고감독위원장·위원은 비임원. 나머지 이사회·감사위원회 소속 직위는 모두 임원임.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중앙회의 기구 및 임원들의 권한을 재편하는 것으로서, ① 회장의 권한을 제한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나머지 임원들에게 분산시키고, ② 특히 임원 중 전무이사·지도이사를 통합한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③ 이사회, ④ 감사위원회, ⑤ 금고감독위원회의 구조와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중앙회 회장의 권한 제한·분산 검토

개정안은 ① 회장의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 범위에서 현행 신용공제대표이사 소관 업무 외에 경영대표이사·금고감독위원장 소관 업무까지 추가로 제외하여 실질적인 권한 범위를 대외업무로 국한시키고(이성권의원안-1 제65조제1항·제2항), ② 회장의 직원 임면 권한 외에 승진·전보 권한을 폐지하여 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금고감독위원장이 각각 소속 직원의 승진·전보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며(이성권의원안-1 제66조제1항), ③ 회장의 주요 임원 성과평가 권한도 이사회 소속으로 신설되는 성과평가위원회에 이관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5조의2제7항·제8항 삭제 및 제60조의2 신설), ④ 경영대표이사·금고감독위원장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 규정으로서 신용공제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재판 등의 대리인 선임 권한 등을 부여해주며(이성권의원안-1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8항), ⑤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4조의2제5항), ⑥ 기타 제도보완 사항으로 회장 선출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64조의2제1항).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 -----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현행	이성권의원안-1
<u>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49)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u>금고감독위원장</u>”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u>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u>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u> ② <u>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65조의2(<u>신용공제대표이사</u> 등의 직무) ① ~ ⑤ (생략)⁵⁰⁾ ⑥ (생략)⁵¹⁾	<u>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u>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u>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u>경영대표이사</u> 등의 직무) ① ~ ⑤ (개정안 생략: 목차 11-(3) 및 11-(6)에서 검토)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삭제> <삭제>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이사회) ① (생략)⁵²⁾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6. <u>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u>	제6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 생략: 목차 11-(3)에서검토)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u>

현행	이성권의원안-1
7. (생략) ④ (생략)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② (생략) ③ <u>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u> ④·⑤ (생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④ (생략)⁵³⁾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⑦ (생략)⁵⁴⁾ ⑧ <u>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u>	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 7.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 생략: 목차 10에서 검토)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u>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u>

현행	이성권의원안-1
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⑩ (생략) ⁵⁵⁾	표이사와 금고감독위원장은----- ----- ----- -----. ⑨·⑩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u> 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u>제60조의2, 제61조, 제64조의2</u>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u>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u>	
제7조(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u>제64조의2제5항 본문</u> 의 개정규정은 같은 <u>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u> 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u>제64조의2</u>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u>	

49)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50) 「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제4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1) 「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중 핵심 내용은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신용공제대표이사·경영대표이사·금고감독위원장 등 주요 임원에게 이관하고 회장은 대외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들 임원은 회장과 달리 다음 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선임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반면,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회장과 달리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어 대표성은 일부 제한된다는 장·단점이 동시에 있음.

52) 「새마을금고법」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53)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54)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5)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자격요건 및 선임방식]

구분		자격요건	선임방식
이 사 회	회장	금고 회원	회원 투표
	상근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인사추천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총회 선출
		지도이사·전무이사 (개정안:경영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금고이사장이사	시·도별 추천 → 총회 선출
		전문이사	이사회 의결 → 총회 선출
감 사 위 원 회	감사위원장(상근)	총 5명 중 3명 이상이 다음 경력 - 중앙회·금고, 금융기관 10년 이상 - 금융 분야 석사이상 학위 + 연구기관·대학 5년 이상	인사추천위 추천 → 총회 선출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감사위원(비상근)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5년 이상 - 상장법인 관련 임원 5년 이상 - 국가·지자체 등 재무회계 감독업무 5년 이상	
금 고 감 독 위 원 회	금고감독위원장(상근)	- 중앙회·금고 감사·감독·회계 부문 상근직 10년 이상 - 은행 감사·회계 부문 상근직 10년 이상	인사추천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총회 선출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금고감독위원(비상근)	- 금융업 관련 국가·연구·교육기관, 금융감독원 공무원·상근직 10년 이상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 5년 이상	

다만, 2023년 6월 특정 지역금고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출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동년 8월에는 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자산운영 및 대출제공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동년 10월 사임⁵⁶⁾하면서 회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으며,

동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⁵⁷⁾에서 발표한 「새마을금고

56) 이후 2024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음.

57) 행안부·금융위·금감원·한은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8명 + 금고이사장 4명으로 구성

경영혁신방안」에도 회장 권한분산 및 경영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경영혁신방안 주요 내용]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과제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중앙회·금고 지배 구조 개혁	1. 중앙회장 권한분산 및 대표이사체제 전환 2.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 3. 회장 연임제한 및 임원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확립 4.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 5.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6.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조직문화 및 경영 관행 혁신	7.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체제 확립 8. 조직문화 혁신으로 불합리한 관행 근절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노력	9. 위기관리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10. 책임성·전문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 인사관리 11. 급여 반납, 예산 합리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건전성 및 리스 크 관리 강화	12.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차이 완전 해소 13. PF대출·공동대출 등 리스크관리 강화 14.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15.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금고 감독체계 개편	16.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 17. 검사인력·전문성 강화를 통한 검사품질 향상 18. 부실방지를 위한 금고 지도관리 내실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19. 상근감사 의무선임 등 내부통제 강화 20.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부실금고 구조개선 강화	21. 부실금고 구조개선의 원칙과 기준 강화 22.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개선
	경영합리화제도 강화	23.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한 경영합리화 절차 법제화 24. 금고 경영합리화 추진체계 개편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25. 상호금융업권 최고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 26.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 및 운용체계 개선 27. 고객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 확대	28. 지역·서민 상생 강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 29. 지방시대 맞춤형 공동체회복 지원 강화

또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탁만 제외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다음 표와 같이 이미 회장이 대외협력활동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호금융기관별 임원 업무 권한 비교]

구분	대외협력활동	신용공제사업	기타사업, 기관운영 등	개별금고(조합) 검사·감독
농협중앙회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수협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사업대표이사	사업대표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신협중앙회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회장 총괄	회장 총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 현행: 회장 총괄 - 개정안: 경영 대표이사	회장 총괄

한편, 개정안은 세부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회장의 직원 인사 권한 중 임면(임용·면직) 권한만 남기고 승진, 전보(동일 임원 소속 내 이동), 인사교류(다른 임원 소속으로 이동) 등은 주요 임원이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이미 각 임원이 직원의 승진·전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직원 인사권한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임면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승진·전보 등	각 임원	각 임원	각 임원	회장	회장	각 임원

주) 참고로, 수협·산림조합은 직원을 보유한 임원이 사업전담대표이사뿐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의 중앙회 사업 관련 권한이 모두 각 임원에게 이관된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승진·전보·인사교류 중 인사교류는 직원의 소속 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처럼 각 임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중앙회 일반사무를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가 다른 임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회장 중임 제한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기관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협은 중임 자체가 불가하고, 수협은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하며,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는 중임은 물론 1회 연임도 가능한데,

개정안은 이 중 가장 엄격한 입법례인 농협을 참고하여 중임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장 임기 관련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임기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연임·중임 여부	중임불가 연임불가	중임가능 연임불가	중임가능 1회연임가능	중임가능 1회연임가능	중임가능 1회연임가능	중임불가 연임불가

개정안과 같이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인의 권한 독점 및 남용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기관장의 조직 이해도가 저하되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도 함께 감소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임.

다만, 전술하였듯이 최근 중앙회 회장의 일탈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서도 회장의 권한제한을 제안하였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모두 동 개정내용에는 찬성하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문구로는 기존 회장 경력자들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입법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단으로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⁸⁾.

58) 참고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22005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1인)」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칙 적용례에 동일한 문구를 규정하였음.

부 칙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3) 경영대표이사 직위 신설 검토

개정안은 ① 기존 지도이사·전무이사를 통합한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0조제2항), ② 그 직무범위로서 기존 지도이사·전무이사의 직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65조의2 제1항).

현 행	이성권의원안-1
제60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회장, <u>신용공제대표이사</u> ,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6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영대표이사</u> 및 <u>신용공제대표이사</u> ----- -----.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④ (개정안 생략: 목차 10에서 검토)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임원 중 <u>신용공제대표이사</u> ,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개정안 생략: 목차 11-(4)에서 검토) ② ----- <u>경영대표이사</u> 와 <u>신용공제대표이사</u> , <u>감사위원장</u> 및 <u>금고감독위원장</u> ----- ----- -.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1-(5)에서 검토)
제65조의2(<u>신용공제대표이사</u> 등의 직무) <신설> ※ 제2항 + 제4항 내용 종합	제65조의2(<u>경영대표이사</u> 등의 직무) ① <u>경영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u> 1. <u>제67조제1항제59)제1호(금고의 사업의 지도로 한정한다)·제2호·제4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u> 2. <u>제6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u>

현행	이성권의원안-1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제4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	<u>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1-(6)에서 검토) <삭 제>

현행	이성권의원안-1
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⑦·⑧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대표이사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 -----. ⑥ (현행과 같음) ⑦·⑧ (개정안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9) 「새마을금고법」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이는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각 임원에 이관하는 동시에, 중앙회 일반 사업(신용·공제 외 사업) 및 기관 행정사무 수행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지도이사·전무이사 2인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를 1인이 통합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새마을금고 전무이사·지도이사 업무 통합 방안]

현행 소관	업무	개정안 소관
지도이사	§67①제1호 금고 사업·경영 지도 ※ 다만, 금고 경영지도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이관 §67①제4호 금고 사업 지원 §67①제7호 정부등 위탁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에 한정) §67①제8호 법령상 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에 한정) §67①제9호 의료지원사업 §67①제11호 금고 회계 통일·조정 §67①제12호 국외 협력사업 §67①제13호 기타 주무부장관 승인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에 한정)	경영대표이사
전무이사	§67①제2호 교육훈련·조사연구 §67①제7호 정부등 위탁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 제외) §67①제8호 법령상 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 제외) §67①제10호 기타 부대사업 §67①제13호 기타 주무부장관 승인사업(금고지도 관련 사업 제외)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모두 일반사업 및 기관운영을 임원 1명⁶⁰⁾이 수행하고 있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비해 신용·공제 외 일반사업 비중이 낮다는 점⁶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대표이사의 업무 부담이 확대되어 경영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도 중앙회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0) 농협은 전무이사, 수협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산림조합은 사업대표이사, 신협은 감사·감독 이사
61)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공제사업 외에도 조합원 생산물 제조·가공·판매, 생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 조합원 공동이용시설·기자재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이나,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사업 외에는 내부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정도만 수행중임.

(4) 감사위원회 소속 및 구성 개편 검토

개정안은 ①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소속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이관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1조제1항), ② 감사위원을 별도의 인사가 아닌 이사 중 선임하되, 총 5명 중 외부전문가(전문이사)의 수를 3명 → 4명으로 확대하며(이성권의원안-1 제61조제2항), ③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전문이사) 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61조제3항).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 행	이성권의원안-1
제61조(감사위원회) ① <u>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61조(감사위원회) ① <u>이사회는 중앙회의 업무-----위원회-----설치하여야 한다.</u>
② <u>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u>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1명과 전문이사 4명으로 구성한다.</u>
<신 설>	③ <u>감사위원장은 전문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u>
<신 설>	④ <u>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총회에 있다.</u>
③ <u>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u>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u>신용공제대표이사</u> 1명, <u>지도이사</u> 1명, <u>전무이사</u>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u>감사위원</u> 5명을 임원으로 둔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삭제> <삭제> ⑦ 감사위원----- ----- -----제5항에-----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 -----<u>경영대표이사</u> 1명 및 <u>신용공제대표이사</u> 1명----- ----- <u>금고감독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개정안 생략: 목차 11-(5)에서 검토> ② (개정안 생략: 목차 11-(3)에서 검토)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1-(5)에서 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0조의2, 제61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u>준비행위</u> 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임기는 2026년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직속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감사위원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며 이사가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듯 감사위원회가 ①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 소속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독립성 유지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② 집행기관의 일환으로서 집행 관련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할 경우 감사 업무의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 입법례를 살펴보면,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현행 새마을금고 모두 감사위원회를 중앙회 직속으로 두고 감사위원도 이사와 겸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전술한 독립성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2017년 12월 26일⁶²⁾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소속에서 중앙회 직속으로 이관한 후 얼마 지나지

62) 시행일은 2019년 3월 15일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소속 등]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감사기구 명칭	감사위원회					
감사기구 소속	중앙회	중앙회	중앙회	이사회	중앙회	이사회
감사위원 이사 겸임	비겸임	비겸임	비겸임	겸임	비겸임	겸임

둘째, 개정안은 5명의 감사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도 그 외부전문가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회 집행부를 객관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다음 표와 같이 농협은 이미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등]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전체 위원수	5명	3명	3명	3명	5명	5명
외부전문가 위원수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위원장	외부전문가 중 호선	전체위원 중 호선	전체위원 중 호선	전체위원 중 호선	전체위원 중 호선	외부전문가 중 호선

다만, 외부전문가의 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경우, 이미 현재도 감사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전문가이고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장도 외부전문가 중에 호선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직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도 일정 정도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이사회 및 임원 구성 개편 검토

개정안은 ①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인 이사(전문이사)의 비중을 당초 “1/3 이상”에서 “회장·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의 1/2 이상”으로 확대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4조제3항), ② 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며(이성권의원안-1 제64조제1항 후단 신설), ③ 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외부전문가인 이사(전문이사)의 경우 임기 4년 중 2년이 되는 때에 이사회(의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64조의2제5항).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u>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문이사 1명</u> 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u>감사위원 5명</u> 을 임원으로 둔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 ----- <u>경영대표이사 1명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u> ----- ----- <u>금고감독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u>이 경우 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② (생략)	② (개정안 생략: 목차 11-(3)에서 검토)
③ <u>감사위원</u> 을 제외한 임원의 <u>3분의 1</u>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u>회장, 경영대표이사 및 신용공제대표이사</u> 를----- <u>2분의 1</u> -----.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개정안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② ~ ④ (생략) ⁶³⁾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⁶⁴⁾ ⑧ (생략)⁶⁵⁾ ⑨ · ⑩ (생략)⁶⁶⁾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개정안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⑨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할 당시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임원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63)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

이 중 핵심은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 이사인 전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금고이사장·회원 출신 14명(66.7%), 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7명(33.3%)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금고이사장·회원 출신 10명(47.6%), 외부전문가 11명(52.4%)으로 후자의 비율을 약간 높게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로,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은 개정안과 유사한 구성을 제시하되 금고이사장이사 및 전문이사를 각각 8명으로 하여 이사회 총원을 19명으로 설정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이사회 구성 변화]

구분		현행	이성권의원안-1	경영혁신방안
금고이사장 /회원	회장	1명	1명	1명
	금고이사장 이사	13명	9명	8명
	소계	14명(66.7%)	10명(47.6%)	9명(47.4%)
외부 전문가	상근이사 (전무·지도·신용공제대표이사)	3명	2명 (경영대표·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경영대표·신용공제대표이사)
	전문이사	4명	9명	8명
	소계	7명(33.3%)	11명(52.4%)	10명(52.6%)
총원		21명(100.0%)	21명(100.0%)	19명(100.0%)

주) 총원은 이사수 상한 기준

· 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65)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어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6)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중앙회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제고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이사의 일부 증원은 가능하나 다음 표의 다른 상호금융기관 사례에 비추어볼 때 외부전문가 비율이 50%를 상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이사회의 외부전문가 정수]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외부전문가 정수	13명 이하 (46.4% 이하)	10명 이하 (45.5% 이하)	9명 이하 (50.0% 이하)	10명 이상 (40.0% 이하)	7명 이상 (33.3% 이상)	11명 이상 (52.4% 이상)
총원(상한)	28명	22명	18명	25명	21명	21명

한편, 개정안은 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개별조합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의 1/5 이상을 여성에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 1명을 반드시 이사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음.

[상호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의 여성 우대 규정]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개별 조합·금고	1/5 이상여성에 배분 노력 ※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이면 여성 1명 선출 의무			-	-	-
중앙회	-	-	-	-	-	여성 1명 이상 선출 노력

또한 개정안은 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하되, 2년이 되는 때에 이사회 재신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① 이사회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데 대한 견제 장치이며, ② 해당 이사의 직무 수행이 적절한 경우 계속 재신임은 물론이고 추가 연임도 할 수도 있고, ③ 농협의 경우는 회장·조합장이사에 비해 상근·전문이사의 임기를 짧게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이사회의 이사별 임기]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회장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이사장이사 조합장이사	4년	2년	2년	4년	4년	4년
상근이사	3년	2년	2년	4년	4년	4년 ※ 2년차에 이사회 재신임要
전문이사	2년	2년	2년	4년	4년	4년 ※ 2년차에 이사회 재신임要

주)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모두 제한없이 연임 가능

(6) 금고감독위원회 제도 개편 검토

개정안은 ① 금고감독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에 추가하고(이성권의원안-1 제64조제1항 전단), ② 금고감독위원장 선출 방식을 현행 위원회 호선에서 총회 선출로 변경하며(이성권의원안-1 제79조의3제1항), ③ 금고감독위원장의 직무에 기존 개별 금고 감독·검사 외에 그동안 지도이사가 수행하던 금고 경영 지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65조의2제3항).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u>신용공제대표이사</u> 1명, <u>지도이사</u> 1명, <u>전무이사</u>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u>감사위원</u>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 ----- <u>경영대표이사</u> 1명 및 <u>신용공제대표이사</u> 1명----- ----- <u>금고감독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후단 신설>	<개정안 생략: 목차 11-(5)에서 검토>
② 제1항의 임원 중 <u>신용공제대표이사</u> , <u>지도이사</u> , <u>전무이사</u> 및 <u>감사위원</u> 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u>경영대표이사</u> 와 <u>신용공제대표이사</u> , <u>감사위원장</u> 및 <u>금고감독위원장</u> ----- -----.
③ (생략)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1-(5)에서 검토)
제65조의2(<u>신용공제대표이사</u> 등의 직무) ①·② (생략)	제65조의2(<u>경영대표이사</u> 등의 직무) ①·② (개정안 생략: 목차 11-(3)에서 검토)
③ <u>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67)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u>	③ <u>금고감독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u>

현행	이성권의원안-1
<u>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u> ④·⑤ (생략) ⑥ (생략) ⑦·⑧ (생략)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u>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u>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u>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u> ④ (생략)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u>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u> ② <u>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③ <u>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 <u>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u>	<u>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u> 1. 제67조제1항제1호68)(금고의 경영지도에 한한다)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 ④·⑤ (개정안 생략: 목차 11-(6)에서 검토) ⑥ (현행과 같음) ⑦·⑧ (개정안 생략: 목차 11-(2)에서 검토)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 -----<u>중앙회에</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구성</u> <u>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u>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u>금고감독위원회 위원</u>-----

현행	이성권의원안-1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2. (생략)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②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금고감독위원</u>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u>제64조</u>, 제64조의2, <u>제64조의3</u>, 제65조, <u>제65조의2</u>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u>2026년 3월 15일</u>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0조의2, 제61조, 제64조의2 및 <u>제79조의3</u>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u>준비행위</u>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1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중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u>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u>금고감독위원회</u>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u>중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u>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중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7) 「새마을금고법」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6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첫째, 금고감독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다음 표와 같이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에는 없으나,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우수 인력 영입을 촉진할 수 있고, ② 금고감독위원장의 업무상 독립을 확보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음.

[개별 금고·조합 감독기구 현황 비교]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명칭	조합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 (검사감독이사가 실시)	금고감독위원회	금고감독위원회
구성원 신분	비임원	비임원	비임원	-	비임원	임원
퇴직기간 요건여부	2년 이내 조합/중앙회 근무 제외	2년 이내 조합 근무 제외	2년 이내 조합 근무 제외	-	2년 이내 금고/중앙회 근무 제외	2년 이내 금고근무 5년 이내 중앙회근무 제외
위원 선출방식	위원장제청 이사회결	인사위추천 이사회선출	인사위추천 이사회선출	-	총회 선출	총회 선출
위원장 선출방식	총회 선출	위원회 호선	인사위추천 이사회선출	-	위원회 호선	총회 선출

둘째,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우, 총회에서 위원만이 아니라 그 중 누구를 위원장으로 선출할지까지 직접 결정하여 대표성이 일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금고감독위원장의 직무에 개별 금고 감독·검사 외에 그동안 지도이사(개정안에 따른 경영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금고 경영 지도를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 지도이사의 지도 업무 중 금고
사업지도는 금고감독위원회가 아닌 경영대표이사가 수행하게 되어,
사업지도와 경영지도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12. 대규모 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안-2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⁶⁹⁾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⁷⁰)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 ----- ----- ----- -----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

69) 개정안은 입안 과정의 실수로 금고 상근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의도는 대규모 금고의 상근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후자를 기준으로 검토를 실시함.

7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현행	이성권의원안-2
④ ~ ⑪ (생략) ⁷¹⁾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 ⑪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 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71)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 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⑩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법령은 1983년 제정시 원칙적으로 금고의 임원을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만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고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하여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이후 적용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 등을 거쳐, 현재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고에 1~3명의 상근임원(상근이사장·상근이사 또는 상근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되(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5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에는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이사를 반드시 1명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18조제3항).

개정안은 이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행정안전부 계획상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에는 상근감사도 1명을 두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회원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비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임원은 현행법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함. 참고로, 상근감사는 검사·회계·재무 관련 상근직 또는 법조인·회계사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받고 있음.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현행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회계·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이사장 또는 이사 직위에만 상근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사장·이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감사 직위에도 상근직을 의무화한다면 금고 경영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조합에 대하여 상근감사 1명 선임을 의무화하는 입법례가 있음.

[상호금융기관 상근감사 관련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개별 조합·금고	1명 의무 (8천억원 이상 지역농협)	비의무	비의무	1명 의무 (2천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	비의무	1명 의무 (8천억원 이상 지역금고)

13.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 신설

개정안은 금고 이사장이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19조의2 신설 등).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1
<신설> 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목차 10에서 검토) ④ (생략: 목차 10에서 검토) ⑤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1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신설>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 제76조⁷²⁾에 따른 감사 결과 2. 제79조제6항⁷³⁾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⁷⁴⁾에 따른 검사 결과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 -----. 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72)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 상근이사는 금고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상 주요 업무를 전담시키는 직위로서 명예직인 다른 임원과 달리 급여도 지급받는다는 점⁷⁵⁾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ii) 이에 농협은 지역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⁷⁶⁾, iii)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⁷⁷⁾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금고 상근이사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④ 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 「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4)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① 회원이 재적회원(在籍會員)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5)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⑩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76)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7) 「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 금고 이사장 장기 재임 제한

개정안은 금고 이사장이 2회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퇴임한 후에도 다른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이상식의원안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현행	이상식의원안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78)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u>연임</u>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u>연임</u>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중임</u> <u>할</u> -----.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7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7. (생략) <u><신설></u> <u>18.</u>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퇴임한 이사장</u> <u>19. (현행 제18호와 같음)</u>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u>제20조제3항</u> 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장부터 적용</u>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2차례 연속하여 연임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례 중임한 것으로 본다.	

78)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결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79)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현행법 제18조 전단은 금고 이사장을 2회까지만 연임(4년 × 3회 = 12년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회 연임 후 1회를 쉬고 다시 2회 연임하며 이사장 직위를 장기간 재직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18조 후단은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2년 후 선임되면 연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년간 다른 임원(통상 이사) 직위에 선임되었다가 다시 이사장에 선임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사장을 2회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퇴임 후 다른 임원 직위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의 이사장 장기 재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이사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인의 권한 독점 및 남용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이사장의 조직 이해도가 저하되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도 함께 감소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임.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제20조제3항과 같이 이사장을 2회까지만 중임하도록 제한하면 퇴임 이사장이 다른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것을 연임 제한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없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21조제1항의 개정 필요성은 다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사장을 2회까지만 중임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현행법 제20조제3항 후단 중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은 연임제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 밖에 퇴임 이사장이 다른 임원 직위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임원 직위에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중인 퇴임 이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모두 개별 조합장·이사장에 대해서 연임은 2회 이하로 제한하되 중임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⁸⁰⁾

[상호금융기관 조합장·이사장 임기 관련 입법례(상임기관장 기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개별 조합·금고	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2회중임가능 2회연임가능

80) 퇴임한 조합장·이사장이 다른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례는 다른 상호금융 기관에 없음.

참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④ 건전성 강화 및 회계제도 개선

15. 금고·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제한 근거 신설

개정안은 비회원에 대한 금고·중앙회 대출 제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30조).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 행	이성권의원안-2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u>사업을</u>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 ----- -----제28조제1항 ⁸¹⁾ 의 사업을----- ----- 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비회원 사업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제1항의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1)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바. 어음할인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현행법은 금고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금고의 모든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적인 비회원 대출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과다하게 실행한 일부 금고에서 해당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여 회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예금을 대규모 인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비회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지 못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규정(여신업무방법서)으로 제한 가능한 권역외 대출만 신규대출의 1/3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비회원 대출 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i) 최근과 같이 비회원 대출이 과다하게 실행되어 금고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민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고,
- ii)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신협⁸²⁾ 등도 동일한 대출제한의

-
- 4. 지역사회 개발사업
 -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8. 의료지원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82)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67조제5항⁸³⁾은 중앙회에 관하여 제30조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에도 비회원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것임.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i) 중앙회의 회원은 개별금고인데 개별금고는 중앙회로부터의 대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 여유자금의 상당부분이 개별금고가 아닌 비회원들에 대한 대출로 운용되어야 하는 구조이고, ii) 이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 등도 지역농협·수협의 비회원 대출제한 근거는 두고 있으나 중앙회의 비회원 대출제한 근거는 두지 않고 있어, 중앙회에 대한 준용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83) 「새마을금고법」

제67조(사업)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16. 금고·중앙회 적립 의무 강화 등 회계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 금고·중앙회의 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적립 의무를 강화하고(이성권의원안-2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② 현재 “자본금+제적립금+그밖의 잉여금”으로 규정된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부채”로 개정하며(이성권의원안-2 제35조제1항), ③ 회원에 대한 배당금 산정 기준을 출자좌수에서 출자액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그 규모의 상한도 설정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35조제10항).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 ----- <u>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u> ----- ----- ----- ----- <u>20</u> ----- -----.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填)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 ----- ----- ----- <u>20 이상을</u> ----- ----- <u>적립하여야 한다.</u>
④ 금고는 <u>사업이나</u>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 <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u> ----- -----.

현행	이성권의원안-2
⑤ (생략)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u>납입출자좌수에</u>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 생략: 목차 8에서 검토)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정관으로</u> <u>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u> <u>자액에</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7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 배당부터 적용한다.	

(1) 적립 의무 강화

현행법은 금고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① 법정적립금으로 그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② 특별적립금으로 그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할 수 있으며, ③ 그 밖에 임의적립금을 명시적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적립 의무를 강화하여 ① 법정적립금을 20% 이상 의무 적립하고, ② 특별적립금도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며, ③ 임의적립금도 정관으로 기준을 정하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이에 따르면 금고는 매년 잉여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됨.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개정안에 따른 적립 기준 변동]

구분	적립목적	현행	개정안
법정적립금	대손 상각, 해산시 비용 충당	잉여금 <u>15% 이상</u> 의무 적립	잉여금 <u>20% 이상</u> 의무 적립
특별적립금	결손 보전, 회계사고 충당	잉여금 <u>15% 이하</u> <u>임의</u> 적립	잉여금 <u>20% 이상</u> <u>의무</u> 적립
임의적립금	사업준비금, 배당준비금	<u>기준 없음</u>	<u>정관상 기준</u> (<u>10% 이상</u> 유도)

이러한 적립금은 명칭 및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건전성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활용되는 재원으로서 적립률의 제고는 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2) 자기자본 정의 개정

‘자기자본’은 회계기준상 ‘자산’에서 타인자본에 해당하는 ‘부채’를 차감하여 도출되며, 재무제표상으로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분됨.

[회계기준상 자기자본의 구성]

구분	세부구성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등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재평가잉여금 등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당기순손익 등

현행법상 자기자본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법정 적립금의 한도,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한도, 주무부장관 경영지도의 요건 등 다양한 재무행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상 자기자본의 활용처]

근거규정	활용처	세부내용
제29조제1항	동일인 대출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제35조제1항	법정 적립금 한도	매년 “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할때까”지 잉여금의 15% 이상 법정 적립 의무
제67조제3항	출자 한도	“자기 자본의 범위”에서 일부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제80조제1항제1호	경영지도 요건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자기자본 초과” 부실대출을 보유하는 등의 경우 경영지도 실시

이러한 자기자본을 현행법은 “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22년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회계관행상으로는 통상 자기자본에 포함되나 현행법상 자기자본의 정의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괄하는 동시에 향후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누락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인 회계기준상으로도 자기자본의 정의는 “자산-부채”이고, ② 다음 표와 같이 자기자본을 “자산-부채”로 정의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자기자본을 “자산-부채”로 정의한 입법례]

법령명	조항	자기자본의 정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을 뺀 금액
공인회계사법	제29조제2항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을 차감한 금액
관세사법	제17조의6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을 뺀 금액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법무사법	~~제47조의8~~ 제2항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
변리사법	제6조의17 제2항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을 뺀 금액
변호사법	~~제58조의8~~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

법령명	조항	자기자본의 정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1항제1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세무사법	제16조의8 제2항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을 뺀 금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4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제4호	자산총액-부채총액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3항 제4호	자산총액-부채총액

(3) 배당금 산정기준 변경 및 상한 설정

현행법상 배당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납입)출자좌수란 회원의 출자금을 금고에 출자할 수 있는 단위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참고로, 현행법은 이러한 단위금액을 금고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2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을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이 출자 단위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⁸⁴⁾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84) 출자는 단위금액 단위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자금이 단위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반드시 단위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 누적액도 단위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예를 들어 단위금액이 2만원인 금고의 회원이 15좌를 출자하여 30만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n년도에 10%인 3만원의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출자금은 33만원(16좌 + 나머지 1만원)이 됨. 이후 n+1년도에는 33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상 배당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야 하기 때문에 16좌에 해당하는 32만원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만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이는 배당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도 모두 배당금 산정기준을 출자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상호금융기관 배당금 산정기준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배당금 산정기준	이용실적 및 출자액수	이용실적 및 출자액수	이용실적 및 출자액수	출자액수	출자좌수	출자액수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배당금 규모의 상한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배당성향)이 높아 적립금 등 유동성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어, 그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목차(1)에서 본 것과 같이 잉여금 중 적립금 적립 의무를 확대하여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서 적립금 등을 차감한 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권리인 배당금의 상한까지 규정하는 것은 일부 회원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겠으나,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⁸⁵⁾ 등도 배당금의 상한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5)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산림조합법」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17. 금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의무화

개정안은 “금고가 회원의 지급요구에 적기 대응하도록 예·적금 잔액의 10% 범위에서 의무 보유하는 금액”인 상환준비금의 중앙회에 대한 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28조 제5항).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 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④ (생략)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전액을-----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현행법이 상환준비금의 5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① 개별 금고의 상환준비금 보유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② 해당 자금을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운용 수익 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면 개별 금고의 상환준비금 보유 의무를 중앙회 차원에서 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고, 해당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도 8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	100%			80%	50%	100%

18. 예금자보호준비금 한국은행·금융기관 차입 근거 마련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 자금을 현행 국가(정부) 외에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u>국가로부터의 차입금</u>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 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박성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2)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개별 금고 회원의 예탁금·적금 등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회에 두는 자금으로서,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시 안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음.

현행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은 ① 개별금고의 출연금, ② 중앙회의 출연금, ③ 국가(정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⁸⁶⁾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 체계에서는 유사시 한국은행 긴급여신⁸⁷⁾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한국은행 지원의 개별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에 해당함.

이는 2023년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준비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신뢰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86) 「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87)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은 예금보험,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은 각각 예금자보호기금 등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재원 조성 방법으로 모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한 재원 조성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로 보임.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련 상호금융기관 유사 입법례]

구분	특정 직능인 대상			모든 국민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현행	개정안
준비금 명칭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 기금	예금자보호준비금	
근거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주요 재원	-조합보험료 -정부출연금 -중앙회출연금 -정부차입금 -한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채	-조합보험료 -정부출연금 -중앙회출연금 -정부차입금 -한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채	-조합보험료 -정부출연금 -중앙회출연금 -정부차입금 -한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채	-조합출연금 -중앙회출연금 -정부차입금 -한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금고출연금 -중앙회출연금 -국가차입금	-금고출연금 -중앙회출연금 -정부차입금 -한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다만, 시행일과 관련하여 박성민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성권의원안-2는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내용은 하위법령 개정 또는 기타 준비행위를 위한 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음.

19.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 마련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제10절 신설).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신설>	<u>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u>
<신설>	<u>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u>1. 금고</u> <u>2. 중앙회</u> <u>3. 금고가 출자한 회사</u> <u>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u> <u>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u> <u>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u> <u>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신설>	<u>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u> <u>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u>

현행	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3. <u>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u> 가. <u>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u> 나. <u>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u> 다. <u>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u> 4. <u>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u> 5. <u>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u> 6. <u>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u> 7. <u>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u> 8. <u>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u> 9. <u>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u> 10. <u>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u> 11. <u>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u> 12. <u>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u>
<신설>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u>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u> 1. <u>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u> 2. <u>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u> ② <u>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u> ③ <u>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 1. <u>부실자산의 매입</u> 2. <u>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u>

현행	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신설>	<u>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u> <u>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u> <u>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u> <u>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u> <u>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u> <u>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로 본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성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윤건영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2)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 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따른 부수규정 정비사항으로서,

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용도에 동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대출 또는 지원)를 추가하고(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제72조의3제1항제5호 신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중앙회·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에 동 자산관리회사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박성민·윤건영·이성권-2의원안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4. (개정안 생략: 목차 0에서 검토)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74조(감독 등) ① ----- ----- -----	제74조(감독 등) ① ----- ----- -----	제74조(감독 등) ①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금고와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및	금고, 중앙회 또	금고, 중앙회 및
다음 각 호의	관리회사-----	는 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
구분에 따라	-----	“금고등”이라	-----
감독한다. 다만,	-----.	한다. 이 조에서	-----.
신용사업과 공	-----	같다)-----	-----
제사업에 대해	-----	-----	-----
서는 주무부장	-----	-----	-----
관이 금융위원	-----	-----	-----
회와 협의하여	-----	-----	-----
감독한다.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중앙회에 대</u>	2. <u>중앙회 및 관</u>	2. <u>중앙회 또는</u>	2. <u>중앙회 및 관</u>
한 감독: 주무	<u>리 회사</u> -----	<u>관리 회사</u> ----	<u>리 회사</u> -----
부장관	-----	-----	-----
② 주무부장관,	② -----	② -----	② -----
특별자치시장·	-----	-----	-----
특별자치도지사	-----	-----	-----
또는 시장·군	-----	-----	-----
수·구청장은	-----	-----	-----
제1항에 따른	-----	-----	-----
감독상 필요하	-----	-----	-----
다고 인정하면	-----	-----	-----
<u>금고 또는 중앙</u>	<u>금고, 중앙회 또</u>	<u>금고등</u> -----	<u>금고, 중앙회 또</u>
<u>회</u> 에 대하여 그	<u>는 관리회사</u> --	-----	<u>는 관리회사</u> --
업무 및 재산상	-----	-----	-----
황에 관한 보고	-----	-----	-----
서를 제출하도	-----	-----	-----
록 명하거나 관	-----	-----	-----
계자의 출석 및	-----	-----	-----
의견의 진술을	-----	-----	-----
요구할 수 있다.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산상 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 고에 한정한다.	--. -----	--. -----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 원으로 하여금 <u>금고 또는 중앙 회</u> 의 업무와 재 산에 관하여 검 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제 1호 단서에 따 른 감독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u>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u> 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 <u>금고, 중앙회 또 는 관리회사</u> -----	③ ----- <u>금고등</u> -----	③ ----- <u>금고, 중앙회 또 는 관리회사</u>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④ 주무부장관은 은 금고 또는 <u>중앙회</u> 를 검사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④ ----- ---- <u>금고, 중앙</u> <u>회 또는 관리회</u> <u>사</u> ----- ----- ----- ----- -----.	④ ----- ---- <u>금고등을</u> -- ----- ----- ----- ----- -----.	④ ----- ---- <u>금고, 중앙</u> <u>회 또는 관리회</u> <u>사</u> ----- ----- ----- ----- -----.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금고</u> 또는 <u>중앙회</u> 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u>금고 또는 중</u> <u>앙회의 의결사</u> 항이 위법·부 당한 경우(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 장은 제1항제1 호 단서에 따 른 감독상 필 요한 경우에	⑤ ----- ----- ----- ----- ----- ----- ----- <u>금고,</u> <u>중앙회 또는 관</u> <u>리회사</u> ----- ----- ----- ----- -----.	⑤ ----- ----- ----- ----- ----- ----- ----- <u>금고등</u> ----- ----- ----- ----- -----.	⑤ ----- ----- ----- ----- ----- ----- ----- <u>금고,</u> <u>중앙회 또는 관</u> <u>리회사</u> ----- ----- ----- -----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u>금고, 중앙회</u> <u>또는 관리회사</u> <u>의</u> ----- ----- -----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u>중앙회의</u>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금고</u> 또는 <u>중앙회</u>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u>금고</u> 또는 <u>중앙회</u>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u>금고</u> 또는 <u>중앙회</u>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u>금고</u> 또는 <u>중앙회</u>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u>회</u> 또는 <u>관리회사</u>----- ----- ----- ----- ----- ----- <u>금고</u>, <u>중앙회</u> 또는 <u>관리회사</u>----- ----- ----- ----- ----- ----- ----- <u>금고</u>, <u>중앙회</u> 또는 <u>관리회사</u>----- ----- 1.·2. (현행과 같음) ② ----- ----- ----- <u>금고</u>, <u>중앙회</u> 또는 <u>관리회사</u>----- ----- ----- ----- -----		<u>회</u> 또는 <u>관리회사</u>----- <u>사</u>----- ----- ----- ----- ----- ----- <u>금고</u>, <u>중앙회</u> 또는 <u>관리회사</u>----- ----- ----- ----- ----- ----- <단서 삭제: 목차 22에서 검토> 1.·2. (현행과 같음) ② ----- ----- ----- <u>금고</u>, <u>중앙회</u> 또는 <u>관리회사</u>-----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 ----- -----.		----- ----- ----- -----.
③ 주무부장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③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④ -----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		④ -----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
⑤ (생략) 제74조의3(금고 등 에 대한 행정처 분) ① 주무부장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 에 대한 행정처 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 에 대한 행정처 분) ① -----

현행	박성민의원안	윤건영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관은 <u>금고 또는 중앙회</u>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금고 또는 중앙회</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 ⑥ (생략)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 생략: 목차 23에서 검토) ③ ~ ⑥ (현행과 같음)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u>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 생략: 목차 23에서 검토)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성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윤건영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2)			

금융기관은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⁸⁸⁾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그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이를 매각하여 조직의 재무건전성⁸⁹⁾을 유지함. 참고로, 부실채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만 매각할 수 있음.⁹⁰⁾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이를 자체적으로 회수·관리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연체율이 급증⁹¹⁾하며 부실채권 규모도 확대되자 이를 대부업자로 등록된 손자회사 MCI대부⁹²⁾ 및

88)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구분하는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을 통상 부실채권으로 명명함.

89) 채권이 부실화되면 대손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더 많이 설정해야하고 자기자본/위험자산을 의미하는 자기자본비율(BIS)도 낮아져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하락시키므로, 이를 조기에 매각하는 것임.

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91) <새마을금고 연체율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체율	2.10%	1.93%	3.59%	4.31%	4.81%	5.33%	5.70%	6.19%	6.18%

92)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MG신용정보”의 자회사(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손자회사)로서,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기 시작했는데,

① MCI 대부는 2024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924억원이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⁹³⁾에 따라 총자산을 그 10배인 2조 9,240억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2024년 상반기 기준 13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모두 소화할 수 없고,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저축은행·가계대출 등 여러 금융 분야의 위기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실제로 두 기관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매입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은 누적 3조 7,704억원 수준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현황]

(2024.6.30. 기준)

구분	MCI대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기타	합계
부실채권 매각액	2조 6,872억원	1조 832억원	6,401억원	4조 4,105억원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자산 제한을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문 매입하여 회수·관리하는 자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임.

9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유사 사례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2002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현황]

구분	세부현황
설립	2002. 8. 6. (조합 : 중앙회 3 : 7 공동출자)
주요사업	부실자산 매입, 부실자산 보전·추심 등
조직현황(2023년말)	3본부·7부 및 23지사 / 직원 145명
재무현황(2023년말)	자산 1.94조원 / 부채 1.81조원 / 자본 0.13조원 / 당기순이익 112억원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개정안의 출자자·주요업무·자금조달·기타특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 비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 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이러한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조속히 분리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⁹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개별 금고의 100%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관리 실적이 부진하면 이는 다시 새마을금고의 손실로 이어져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효과가 무색해지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직후부터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할 것임.

또한 유사사례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는 3본부-7부 및 23지사에 직원이 196명인 대규모 조직인데, 새마을금고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만큼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능을 가지는 기존 조직도 효율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⁹⁵⁾

94) 전술한 원리에 따라, 부실채권이 감소하면 대손충당금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BIS)이 상승함.

95)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시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MCI대부(부실채권 매입) 및 MG신용정보(채권 추심 등)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5 상급기관 감독권 강화 및 회원 권익 보호

20. 중앙회장의 개별 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신설 등

개정안은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고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해당 총회에 특정인을 지정·출석시켜 지도·감독을 위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14조제7항·제8항 신설 등).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⁹⁶⁾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 ⁹⁷⁾ 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96) 「새마을금고법」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은 개별 금고에 부실 등이 발생하여 중앙회 차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고의 재무상황 및 향후 조치 등을 회원들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중앙회장이 금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총회에 특정인을 지정·출석시켜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금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새마을금고는 2023년 기준 거래자는 금고당 평균 18,287명으로서 이 중 상당수가 금고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 보다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추정되어 총회가 공고·소집되어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회 소집 권한과 함께 금고가 보유한 회원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이메일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성권의원안-2은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서 현행 우편 발송 등 외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추가하고 있으므로(목차 24 참고), 중앙회장이 마련한 통지문을 금고

⑤ 감사가 제4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97) 「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이사장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수단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⁹⁸⁾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98) 한편,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장에게 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1. 회원의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 신설

개정안은 「상법」을 준용하여 회원이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권리(이하 “해임청구권”) 및 회사에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를 청구할 권리(이하 “대표소송청구권”)를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1 제26조).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행	이성권의원안-1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⁹⁹⁾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¹⁰⁰⁾ 을 각각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 ----- ----- 제385조제2항·제3항 ¹⁰¹⁾ ,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 ¹⁰²⁾ 를---.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② (생략) ¹⁰³⁾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99)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00)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01) 「상법」

제385조(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02)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법령위반 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는 경우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해임 청구권) 및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권리(대표소송청구권)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준용하여 금고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법령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는 경우 회원 100명 또는 3% 이상이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해임청구권) 및 회원 100명 또는 1% 이상이 금고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권리(대표소송청구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i) 이미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금고에 있어 주주(출자자)와 유사한 위치를 가지는 회원에 대해서 준용하지 않을 사유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ii)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¹⁰⁴⁾의 경우에도 이미 「상법」을 준용하여

103) 「새마을금고법」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104)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22. 행안부장관의 금고·중양회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 신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금고·중양회 직원을 직접 제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74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참고로,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는 중양회의 금고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¹⁰⁵⁾ ① 주무부장관은 <u>금고 또는 중양회</u> 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u>금고 또는 중양회에</u>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u>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양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u>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 <u>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의</u> ----- ----- ----- ----- ----- <u>금고, 중양회 또는 관리회사에</u> ----- ----- <u>. <단서 삭제></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③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④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중양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양회 임원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처분(해임·직무정지·견책·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처분(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를 금고·중양회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금고·중양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i) 피감독기관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 까지 감독기관에 직접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이례적이며, ii) 실제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신협¹⁰⁶⁾ 등의 경우 주무

105)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양회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양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양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양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양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양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양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 또는 중양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부처가 직원은 물론이고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도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조합·중앙회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⁷⁾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재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만 수사·감사 의뢰를 전제로 직접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1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23.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규정 법률로 상향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무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제80조의2 신설).

참고로, 이는 2023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임.

현 행	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신 설>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황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황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현 행	박성민·이성권-2의원안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박성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2)

또한 적기시정조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연동하여 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용도에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부실금고의 합병에 필요한 자금 대출·지원을 추가하고(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제72조의3 제1항), ② 주무부장관의 경영지도 요건에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또는 이행실적 저조를 추가하며(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③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등(박성민·이성권-2의원안 제85조제5항) 부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생략)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3----- ----- ----- 5. (현행과 같음)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 대출·지원 또는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합병에 필요한 자금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 5.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② (생략)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②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②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생략)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호(제8호는 제외한다)</u>----- ----- ----- ----- -----
⑤ · ⑥ (생략)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경영지도) ①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 ⑦ (생략) <u>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u> ① 주무부장관은 <u>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u>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u>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	<u>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u> ① 주무부장관은 <u>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u>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u> ① 주무부장관은 <u>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계약이전</u>----- ----- -----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 제1항-----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이전을----- ----- ----- -----. 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이전의----- ----- ----- -----.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 제1항에----- -----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 제80조의3제1항-----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80조의3제1항----- ----- ----- ----- ----- ----- -----. ⑥ -----제80조의3제1항----- ----- ----- ----- ----- ----- ----- ----- -----.	② 제80조의3제1항에-----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80조의3제1항에----- ----- ----- ----- ----- ----- -----. ⑥ -----제80조의3제1항에----- ----- -----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관리인의 선임 및 의무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3항제4호,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① ----- ----- -----제80조의3제6항-----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	② ----- ----- ----- -----.	③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1항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80조의3제	④ 제8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	7항-----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⑤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⑦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는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장관”으로 본다.		계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 으로 본다.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 조의2제1항에 따른 계 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80 조의3제1항----- ----- ----- ----- ----- ----- -----.	① -----제8 0조의3제1항에-----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주무부 장관 또는 회장이 제74 조의2제1항제1호, 제74 조의3제1항제3호, 제79 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직무정지 를 명하거나,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83조(청문 등) ----- ----- ----- ----- ----- -----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 ----- ----- ----- ----- -----	제83조(청문 등) ----- ----- ----- ----- ----- -----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 ----- ----- ----- -----

현행	박성민의원안	이성권의원안-2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⑥ (생략)	----- ----- ----- --. ----- ----- ----- ----- ----- ----- -----. 제8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⑥ (현행과 같음)	----- ----- ----- ----- -----. ----- ----- ----- ----- -----. 제85조(벌칙) ① ~ ④ (개정안 생략: 목차 19에서 검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박성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성권의원안-2)		

개정안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은 표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금고 업무정지·사업양도·합병 등 사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근거를 행정안전부 고시(「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두고 있어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분 효력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세부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 2. 출자금 감액, 자기자본 증대, 보유자산 처분 또는 사무소·조직의 축소 4.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적기시정조치”는 1998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¹⁰⁸⁾에 따라 금융기관 전반에 도입된 제도이며,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서도 각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음.

10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 9. (생략)

개정안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¹⁰⁹⁾과 유사 금융기관 입법례를 고려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용 또한 다음 표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 적기시정조치 세부내용 비교]

금융기관 (금융산업구조개선행법)	농협 (농협구조개선행법)	새마을금고 (개정안)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조직의 축소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합병	합병	합병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09)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칙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80조의2(개정안에 따르면 제80조의3으로 이동)의 제7항¹¹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대한 통지 및 등기소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실금고 관리인 선임에 관한 부수 조항을 현행법 제80조의4(개정안에 따르면 제80조의5로 이동)에 일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¹¹¹⁾에 지방법원 통지 및 등기 촉탁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중복 방지를 위하여 전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안 제80조의5에 부실금고 관리인 선임에 관한 부수 조항을 일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한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에 “주무부장은 제80조의2제3항제4호,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관리인 선임권은 상기 조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0조의5제1항에서 이를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110)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⑦ 주무부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5(관리인의 선임 및 의무 등) ②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안은 부실금고 관리인 선임에 관한 부수 조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제80조의4(개정안에 따르면 제80조의5로 이동)의 제2항 후단¹¹²⁾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음.

112)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기타 제도 개선사항

24.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금고와 중앙회가 각각 회원에 대해 통지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우편 발송 등 외에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안-2 제15조제1항).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u>금고가 그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u>금고는-----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u> <u>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u> <u>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u>
② <u>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 ¹¹³⁾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13) 「새마을금고법」

제58조(총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① 금고의 회원은 2023년 기준 금고당 약 6,648명으로 대규모이며 주소·거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어 현행 방법만으로는 통지가 상당수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전자적 수단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사무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③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¹¹⁴⁾,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관련 서류의 송달¹¹⁵⁾ 등 유사 업무에 있어서도 전자적 수단을 허용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 수단은 주소·거소가 불명확하여 기존 수단으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또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입법례와 같이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14)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5)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둘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개정 또는 그 밖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부칙상 적용례의 조제목을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적용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회소집뿐 아니라 금고·이사회의 모든 통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대상인 본칙의 조제목(회원에 대한 통지 등)을 활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25.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참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새마을금고가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68조제5항 신설 등).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u><신설></u>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앙회”로 보고, 제102조의6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7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로 본다.
제85조(벌칙) ¹¹⁷⁾ ① (생략)	제8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현행	이성권의원안-2
② 금고나 중양회의 임직원 또는 <u>청산인</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② -----<u>청산인(제11호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른 업무관련자를 포함한다)</u>-----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 생략: 목차 25에서 검토)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② 중양회가 제68조제5항에 따른 실손의료공제계약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16) 「보험업법」

-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업법」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을 통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을 간소화하여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7) 「새마을금고법」

제85조(벌칙) ①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상 보험과 유사한 사업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6조¹¹⁸⁾에 따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참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구축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상황임.

i) 공제사업은 회원·조합원 간에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ii) 금고 회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금고의 공제사업이 보험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118) 「새마을금고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이성권의원안-2 제84조).

현행	이성권의원안-2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u>임직원의</u>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별도의 기구</u>를 설치·<u>운영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기구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u>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여 이들의</u>-----<u>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u>-----<u>운영한다</u>.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u>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u>. ④ <u>복지회의</u>-----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1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재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금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퇴직급여공제 및 대출, 휴양시설·경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위한 복지기구 설치 및 법인 인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설치·운영 및 법인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법인세법」¹¹⁹⁾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제사업 등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금¹²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재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운영 및 법인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119)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20)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상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법인세액이 감소함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공제회를 설치하지 않아 입법례가 없으나 일부 직능 단체 공제회의 경우 법률에 기관 설립 등을 명시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 직능단체 공제회 근거 규정 입법례]

구분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근거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조

문 의 처

02)6788-5333